

『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9월 20일

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성 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주요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원탁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○ 본 『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은

- 시정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항,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에서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원탁회의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 연2회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하도록 하여 직업, 연령, 성별 등에 관계없이 토론 주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원탁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안 제6조에서는 토론주제 소관부서가 회의결과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도록 함으로써, 원탁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이 주요 정책수립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원탁회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 현안문제와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,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,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시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(부결)